



제344회 정례회

2015.12.04.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5년 11월 23일

○ 회부일자: 2015년 11월 24일

3. 제안이유

가. 학생과 교직원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여 충북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1) 역사문화 교육의 기본 방향, 소요 자원 확보,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교육에 대한 학생의 참여 증대, 교직원 연수 기회 확대 등

나.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1) 학교의 역사문화 교육 시간 확보, 교육자료 개발·보급, 현장체험학습 운영, 교직원 연수 강화, 학생동아리 및 교사연구회 운영 등

다.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 제8조)

1) 역사문화 교육 관련 문화예술 행사 지원

2) 충북의 역사인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양 사업 지원

라.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점검 등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사업계획서 제출, 실적보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5조에서는 ① 역사문화 교육의 기본 방향 ② 역사문화 교육을 위한 소요 자원 확보 ③ 역사문화 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④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학생의 참여 증대 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에서는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①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역사문화 교육 실시 ② 학교급별 역사문화 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③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현장체험학습 운영 ④ 역사문화 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강화 ⑤ 역사문화 교육 관련 학생동아리 및 교사 연구회 운영 등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 ①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문화예술 사업 지원
 - ② 역사의식 함양에 적합한 충북의 역사인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9조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였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확립과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의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범위와 대상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5.15.][조례 제3790호, 2015.5.15. 전부개정]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한국사 연수”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2.3.] [법률 제13196호, 2015.2.3., 일부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2668호, 2014.5.2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시행 2005.1.11.] [대통령훈령 제137호, 2005.1.11., 제정]

제8조 (국민의 애국정신 고취) ① 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년 및 취임시에 관내 충혼탑을 찾아 헌화·분향하거나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을 방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독립운동관련 기념행사 등의 참석

2. 현충시설물 및 독립유공자 묘소 등의 정화 활동

③ 각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학생들이 제2항 각호의 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기념사업의 지원)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5.8.19.] [법률 제13291호, 2015.5.18.,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타법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타법개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

민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토의견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교과서 바로알 기위한 충북학 부모연 합	제7조 제2호	○ 교과서바로알기 위한 충북학부 모연합에서는,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성명을 발표함(’15.10.21.) ○ 이유는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대안교과서에 대하여 논할 때가 아니라 교육감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안교과서 제작과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주장함.	“반대”	“미반영” ○ 충북학부모연합에서 내세운 조례 제정 반대 이유는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도차원의 대안교과서 제작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조례안은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한국사 국정화가 발표된 ‘15.10.12.은 이미 입법예고 기간 중이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의 활성화와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제정 목적임. ○ 관련 사업에 대한 예로는 ‘길 끝에서 나누는 충북의 문화이야기’ 시리즈를 매년 장학자료로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재 신채호선생을 주제로 제12집을 발간할 예정임.